

# 지역 간 재정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2008. 7. 14 제16호

배준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세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지역 간 재정격차
- II. 선진국의 재정격차 해소 노력
- III. 서울시의 재정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요 약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더불어 꾸준히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지역주민 스스로의 비용부담에 의한 재정자립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기본 전제이고,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 간 재정격차의 심화로 인해 지방자치의 근본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99년 이후 서울시 자치구의 상·하위 20%를 비교한 재정양극화 지수는 세출은 1.67로 비교적 낮은 반면, 세입은 6.77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격차의 주요 원인은 지방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수입의 불균형 때문이다. 재산세수입은 하위 20% 자치구의 비중이 7.8%인 반면, 상위 20%의 비중은 48.4%로 6배 이상 격차가 존재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제도,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및 시비보조금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과 주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과 역교부세를 활용한 주정부 간 수평적 조정을 통해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연대감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은 동경도를 중심으로 동경도와 특별구, 특별구 상호간 재정조정을 위해 도구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구간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도구재정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기준재정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고 이해 충돌 시에는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만장일치제를 운영하는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고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재원 확대와 지방세 비중 증가를 위해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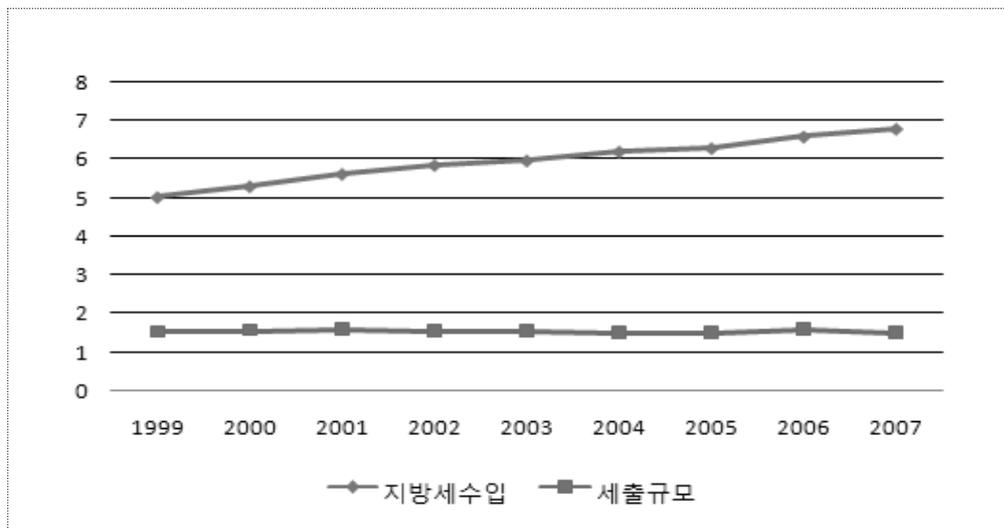
우선 거시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이양과 과세자주권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의 다양한 통제장치를 해제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미시적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산세공동과세, 시비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특히 2008년부터 실시되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역 간 균등배분이 아닌 인구비례에 따른 배분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지역 간 재정격차

###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양극화 심화

#### □ 자치구 간 세입 부문의 재정양극화 심화

- 1999년 이후 서울시의 상·하위 20% 자치구에 대한 재정양극화를 비교한 결과,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세입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재정변수를 상위 20%/하위 20%로 나타낸 양극화지수는, 세출규모는 1.67로 비교적 낮은 반면 지방세수입의 경우 6.77로 상당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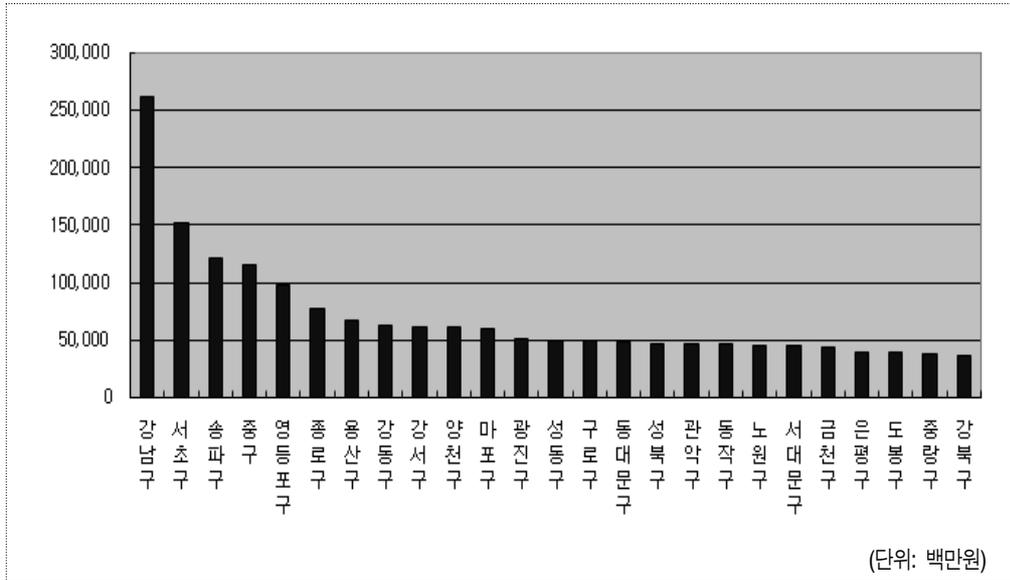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자치구 세출예산 각 년도

[그림 1]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양극화 추이

#### □ 자치구 간 재정격차는 지방세 수입측면에서 격차가 극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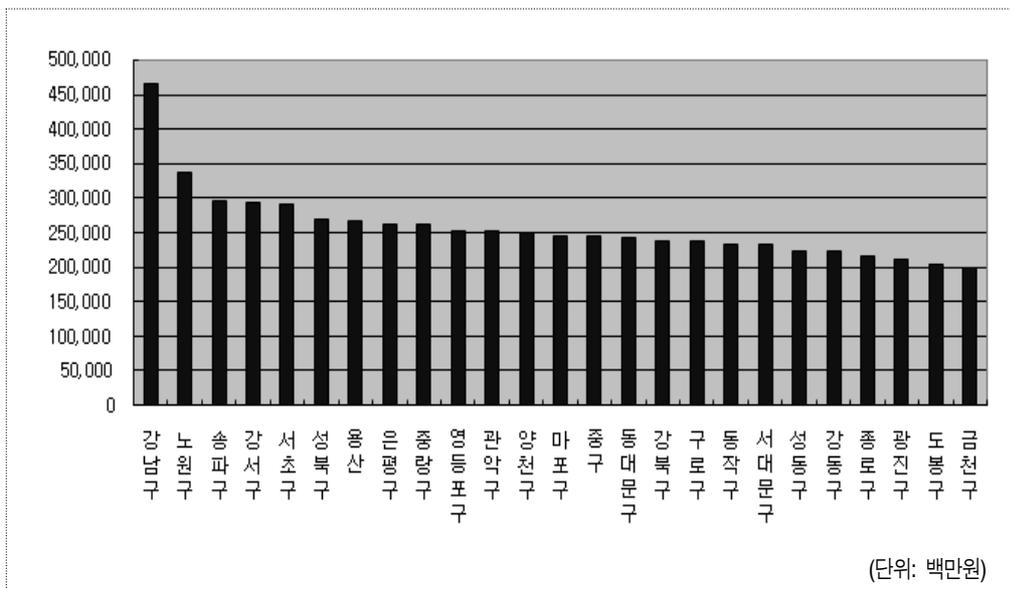
- 지방세 수입이 최저인 강북구와 최대 강남구 간 7배 정도의 차이



[그림 2] 서울시 자치구 지방세수입 비교

□ 세출 부문에서의 격차는 세입에 비해 덜 심각한 수준

- 이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 덕분



[그림 3] 서울시 자치구 세출현황 비교

## 자치구세의 불균형이 지역 간 재정격차 발생원인

- 자치구는 그 특성상 인구 수, 주거, 교육여건 등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차이로 지방세수입 격차가 발생
  - 지방세 징수 실적은 강남구의 경우 전체 자치구 평균의 3.7배에 이르는 반면 강북구는 1/2 수준에 불과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간에 평균적으로 3~4배의 격차 발생
    -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이나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86%로 가장 높고 노원구가 29.1%로 가장 낮음.

<표 1> 자치구 간 재정격차

구분	평균	상위		하위	
		구명	수치	구명	수치
지방세 징수 실적 (백만원)	70,731	강남구	262,571	강북구	36,536
		서초구	152,584	중랑구	38,668
		송파구	121,471	도봉구	38,782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백만원)	0.37	중구	1.54	노원구	0.16
		종로구	0.90	관악구	0.16
		용산구	0.77	강서구	0.18
기준재정수요충족도(%)	76.5	강남구	223.4	은평구	43.2
		서초구	148.9	노원구	44.0
		중구	137.0	도봉구	46.0
재정자립도(%)	51.0	중구	86.0	노원구	29.1
		서초구	77.1	중랑구	30.9
		강남구	75.5	관악구	34.2

자료: 서울시 자료(2008)

- 재산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자치구 세입구조의 틀을 유지하는 한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의 재정력은 한계
  - 재산세수입은 하위 20% 자치구의 비중이 7.8%인 반면, 상위 20%의 비중은 48.4%로 6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
  - 재산세수입의 격차는 지방세수입의 격차로 이어져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표 2>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지표

구분	지방세수입	재산세수입	세출규모	인구
상위20%/하위20% 비율(배)	6.77	6.19	1.67	2.52
상위 20%의 점유비중(%)	50.5	48.4	26.6	28.1
하위 20%의 점유비중(%)	7.5	7.8	15.9	11.2

자료: 임성일,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실태와 해소에 관한 접근", 2007.

###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상당한 재정격차 완화 기대

-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
  - 2008년부터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운영
  -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특별시 자치구세인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제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표준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0%를 각각의 세원으로 하되 공동과세분의 비율은 2008년에는 40%, 2009년에는 45%로 하고 2010년 이후부터는 50%를 적용

-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의 주요 원인인 재산세수입을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상당 수준 완화할 것으로 기대
- 공동과세제도 운영 이후 최고·최저 지역 간 재산세수입이 17배 이상 차이 나던 것이 6배 수준으로 감소 예상

<표 3> 재산세 공동세원화에 따른 재정불균형 완화효과

구분	재산세수입(백만원)		
	최고	최저	격차
현 재	강남 (308,804)	강북 (18,031)	17.1배
공동세도입	강남 (209,439)	강북 (34,975)	6.0배

자료: 최병호,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추진방안의 기대효과, 문제점과 대안모색",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관한 토론회, 한국재정학회 발표 논문, 2007.

## 궁극적으로는 지방세제 개편 및 과세자주권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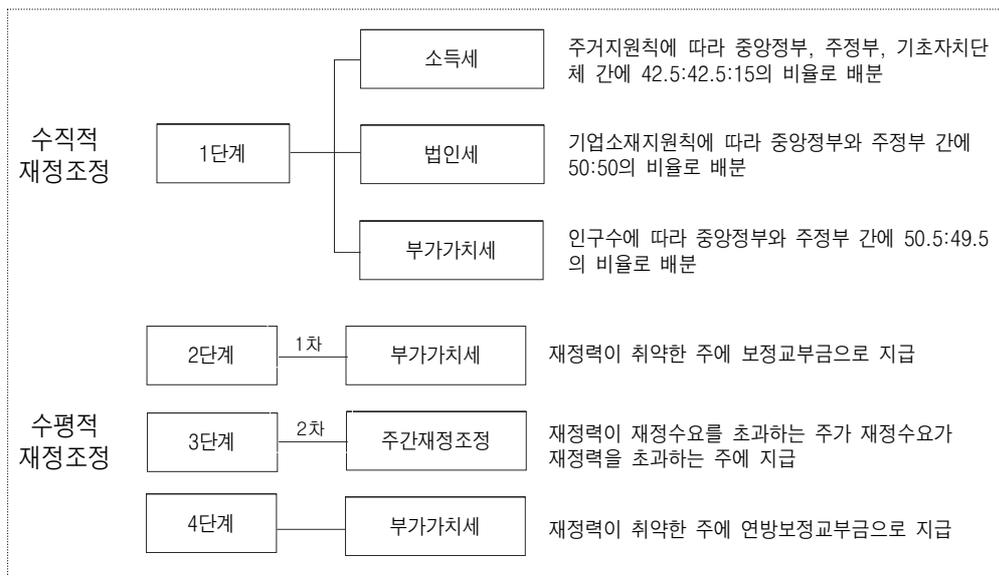
- 조세 중 지방세 비율의 점진적 확대와 과세자주권 확보가 관건
  - 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2인 반면 자원사용 측면에서는 중앙 대 지방 비율이 4:6으로 지방자치제 발전에 걸림돌
  - 따라서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의 확대가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적
  - 다만 지방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국세·지방세간 세원조정,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세 활용

## II. 선진국의 재정격차 해소 노력

### 독일의 역교부세를 활용한 수평적 재정조정

- 독일은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조세 수입에서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중이 높음.
  - 연방제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간에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운영
  - 공동세를 이용한 재정조정은 재정력이 취약한 주를 위한 추가적인 조정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
- 1단계: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조정
  -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재정보조를 하는 제도로서 제1단계로 공동세의 수직적인 조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각 일정비율을 수직적 재정조정을 위해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비율 및 배분 기준은 연방법(Bundesgesetz)에 근거
- 제2~4단계: 주정부 간 수평적 재정조정
  - 제2단계는 부가가치세 수입 중에서 수직적 재정조정 목적으로 사용된 75%를 제외한 25%를 재정력이 취약한 주에 보정교부금으로 제공하여 수평적 재정조정
  - 주의 1인당 세수력이 최소한 전체 주 평균의 92%에 도달하도록 세수력이 약한 주에 우선적으로 배분

- 제3단계는 1~2단계를 통하여 재정조정을 한 후에도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므로 재정력이 약한 주의 1인당 세수력을 전체 평균 세수력의 95%에 근접하도록 재정력이 강한 주가 교부금을 지급
- 제4단계는 연방정부가 부가가치세 수입의 2%를 재정력이 취약한 주에 연방보충교부금 형태로 지급
  - 연방보충교부금은 주정부 간 재정조정을 거친 후 재정력이 평균에 미달한 주에 부족액을 보충해 주는 보통교부금과 각 주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충해 주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 배분



[그림 4]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독일 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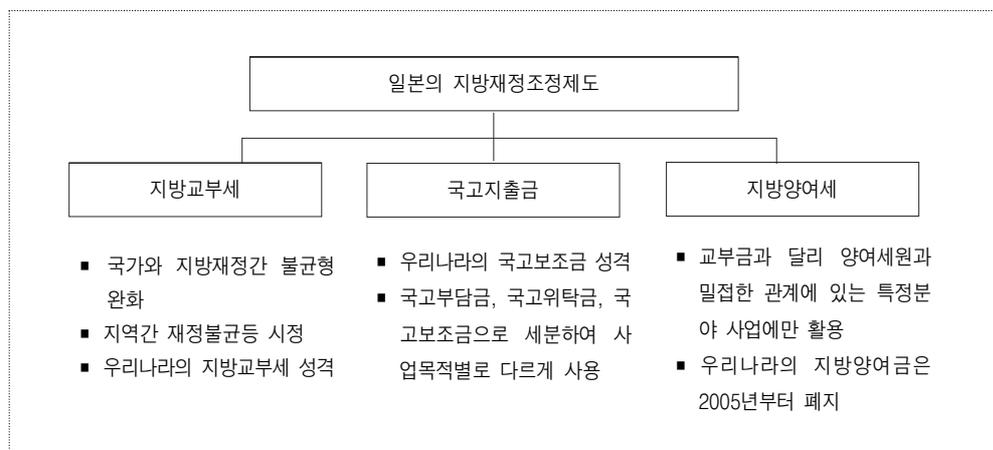
- 독일은 다양한 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주 간의 경제력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각 지역에 같은 수준의 질 좋은 공공재가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들의 연대감을 제고하는 데 기여

- 재정력 격차가 큰 주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의 독특한 제도로 적극적인 도입 검토 필요
- 독일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가운데 역교부금제도는 일반교부금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
  - 우리나라도 역교부금제도의 예상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교부금을 납부하는 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한 보상장치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

### 일본은 도구(都區)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재정격차 해소

□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를 통한 재정조정제도 운영

-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 제도로 구성되어 지방교부세는 자원보장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국고지출금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기능을 담당
- 지방교부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국고지출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와 비슷하며, 지방양여세는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양여금과 비슷한 성격



[그림 5]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동경도는 대도시 동경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구재정조정제도 운영
  - 동경도의 경우 도와 특별구, 특별구 간 재정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대도시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서 운영
  - 도구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조정교부금에 해당
    - 도구재정조정제도는 동경도와 특별구, 특별구 상호간의 자원조정을 통해서 특별구의 행정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확보와 특별구 상호간 행정서비스의 균형이 목적
    - 특별구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대해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는 조례로서 도와 특별구 및 특별구 상호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조치를 강구
  
- 도구협의회 설치를 통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
  - 도구협의회는 도 및 특별구의 사무에 대해 도와 특별구 및 특별구 상호간의 연락조정을 기하기 위해 도와 23개 특별구의 공동기관으로 법에 의해 설치
  - 도구재정조정협의회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등 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안을 협의하여 결정
    - 도구 간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 충돌 시에는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운용하는 만장일치제로 고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 Ⅲ. 서울시의 재정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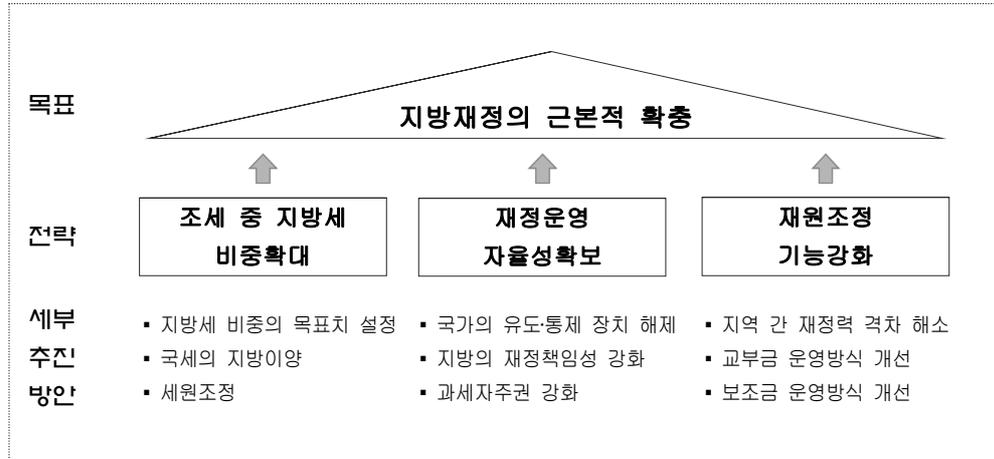
####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처방이 필요

##### □ 거시적 처방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의존적 재정구조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 제기
- 필요한 재원이 자기부담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지원됨에 따라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이 낮은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거시적 처방으로써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대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자체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 미시적 처방

- 서울시 차원의 미시적 처방으로써는 조정교부금, 재산세 공동과세 및 시비보조금제도를 통해 재정격차 완화
- 위의 세 가지 제도는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으로 제도 운영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 기대



[그림 6] 지방재정 확충전략

□ 서울시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처방

단계	세부 전략	내용
거시적 처방	지방세 비중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 조세 중 지방세 비중에 대한 목표 설정 ·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유도·통제장치 해제
	국세의 지방이양과 과세자주권 강화	· 국세의 지방이양과 지자체에 과세자주권 부여 · 지방소비세, 관광세 등 지방의 세원 확충 ·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세 도입
미시적 처방	조정교부금의 안정적 자원확보와 운영방식 개선	· 조정교부금 재원의 세목 조정 · 인센티브 적용 등 특별교부금 운영방식 개선 · 실제 행정수요액과 연계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선정 ·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 개선
	인구비례에 따른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방식 보완	· 재산세 공동세원의 배분방식과 기준 개선 · 인구비례에 따른 배분방식 고려
	기초생활서비스 확보 중심으로 시비보조금 지급	· 각 부서별 보조금 지원사무에 대한 개선 · 지급비율 결정에 자치구의 특성 반영

거시적 처방 1: 지방세 비중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과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 국세 중 지방세 비중의 확대와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

- 1990년대 후반 이후 지방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 비중에 대한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

- 조세 중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25%, 중장기적으로 3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
-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유도·통제장치를 해체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

## 거시적 처방 II: 국세의 지방이양과 과세자주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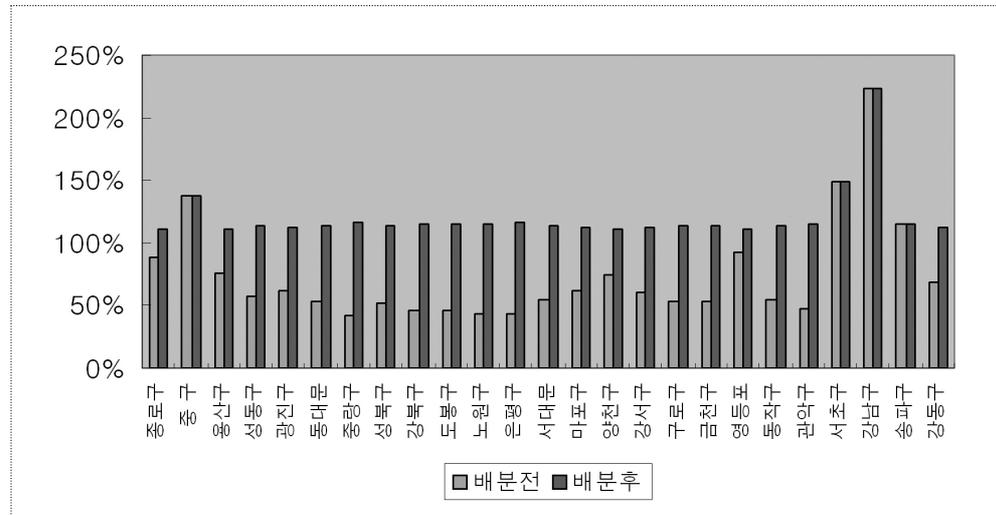
- 국세의 지방이양과 과세자주권 부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 필요
  - 국세 중 특정세목을 지방이양하거나 지방의 특성에 맞는 세목의 신설권한(과세자주권)을 지방에 부여하여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방안 모색
  - 지방소비세의 신설, 관광세 도입 등 외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보다 상대적으로 간편
  -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세 활용 검토

## 미시적 처방 I: 조정교부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운영방식 개선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
  - 서울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조정교부금 배분으로 배분 전 평균 76.5%에서 배분 후 113.5%로 향상(2008년 기준)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자치구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준재정수입액(자치구에 매년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액) 대비 기준재정수요액(자치구 운영상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필요액)을 의미



자료: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2008)

[그림 7] 서울시 조정교부금 배분전·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비교

- 현행제도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정비율로 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에 따라 재원의 규모가 불안정하게 변화
  - 자치구의 좀더 안정적인 자원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세수입 중 경기변동에 덜 영향을 받는 세목의 일정비율로 개선하거나 세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서울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자체 노력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등으로 특별교부금의 운영방식 개선
  - 현행제도에서는 조정교부금 총액의 90%를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10%를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의 재정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와 같이 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경우 특별교부금의 보정효과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부대상의 선정과 자체노력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 행정수요액과 연계한 측정항목·단위와 기준재정수입액의 개선이 필요
  - 변화된 자치구의 행정수요를 수렴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및 사회복지분야 수요 반영이 미흡했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자치구의 예산체계를 고려하여 자치구의 실제 행정수요액 항목과 연계되도록 개선 필요
  -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세 목표액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으나 자치구세 이외의 일반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세입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세입추계액 항목을 추가

<표 5> 서울시 조정교부금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개선(안)

경비의 종류		측정단위
분야(코드)	측정항목	
1. 일반공공행정(010)	① 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
	② 일반관리비	구동공무원수, 행구역면적
2. 공공질서 및 안전(020)	③ 안전관리비	민방위대원수
3. 교육(050)	④ 교육지원비	학교수
4. 문화 및 관광(060)	⑤ 문화체육비	인구수
5. 환경보호(070)	⑥ 환경보호비	유동인구수, 하수도연장
6. 사회복지(080)	⑦ 사회복지비	인구수
	⑧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
7. 보건(090)	⑫ 보건위생비	인구수
8. 농림해양수산(100) 산업·중소기업(110) 과학기술(150)	⑬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9. 수송 및 교통(120)	⑭ 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 도로면적, 미개설도로면적
	⑮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10. 국토 및 지역개발(140)	⑯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녹지대면적, 하천연장
11. 기타(900)	⑰ 인건비	공무원수

## 미시적 처방 II: 인구비례에 따른 재산세 공동세 배분방식 보완

- 재산세 공동세 배분 방식의 형평성 제고
  - 2010년까지 재산세 수입의 50%를 공동세원으로 설정하여 자치구 간 균등 배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 배분방식에 대한 보완 필요
  - 재산세 공동세원의 배분방식에 있어 인구비례에 따른 배분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인구비례 방식은 상주인구는 적은 반면 유동인구가 많은 자치구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인구를 고려하는 등의 일정한 보완 방안 마련
- 자치구세의 조정을 통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만으로는 자치구 재정 문제 대응에 한계
  - 재산세 공동과세는 열악한 자치구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세와 지방세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세목조정을 통해 자치구 재정구조의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

## 미시적 처방 III: 기초생활서비스 확보를 중심으로 시비보조금 지급

-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시비보조금제도
  - 시비보조금은 서울시가 자치구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자금으로 특정사업에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
  - 시비보조금 규모는 2002년 120건에 2612억 원에서 2008년 269건에 817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서울시 각 부서별 시비보조금 지원사무 조정

- 현재 서울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폐지, 일반재원화, 통합, 교부금화, 시 사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재분류 필요
- 이후 시비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분야별 표준지원비율을 자치구의 재정력지수 및 기초생활서비스 수준 등과 연계하여 설정
- 사업별·자치구별 지급비율 결정에는 자치구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기존의 재정력 지수(기준재정수요충족도)외에 구민 1인당 예산액이나 구민 1인당 해당사업 분야의 예산액 등도 고려

**배준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20

jsbae@sdi.re.kr

**이세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2149-1212

skrhee@sdi.re.kr